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907
등록일자	2015.2.5.
결재일자	2015.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명철	**김종덕**	이상현	**이진형**	**김찬곤**	02/08 **최창식**

협조		
	문화기획팀장	**김윤미**
	★문화관광과장	**임일규**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요 약 지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

대상지역 및 규모 :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80개 점포

사업기간 : 2015년 2월 ~ 9월

추진방향

○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구간을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명동 대표 명소지역으로 조성

○ 대상지역 건물·점포주를 중심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정비 유도

○ 중구청(지원)과 간판개선주민위원회(주관) 간 사업추진 협약 체결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시공업체 선정방법 결정(협약 또는 공모)

○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간판 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구비 100,000천원)

○ 지원 : 점포당 제작·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2.24(화) 15:00

○ 구성인원 : 10명(건물·점포주, 전문 공무원 등)

○ 역　　할 : 주민자율 주도 추진, 업체선정방법 의결(공모 또는 협약) 등

추진일정

○ 2015. 2월　　: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5. 2월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구성, 업체선정

○ 2015. 3월　　: 공람공고·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3~8월 : 업소동의서 징구, 간판디자인 협의 및 간판설치

○ 2015. 9월　　: 준공식 개최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

남산주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구간을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명동대표 관광명소로 널리 알리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만화의거리 조성사업 중구청 협력계획(문화관광과-18836)

Ⅱ 추진 필요성

- 명동역~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간 일방통행 언덕길로 우리구 남산주변 역사 문화의 거리 명소지역이자 만화의 거리(재미로)임
- 다양한 업종에 노후된 불법간판이 밀집되어 지저분하며 명소지역임에도 만화의거리를 특정하는 볼거리가 없어 시급히 간판개선 필요

Ⅲ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명동 만화의거리(재미로) 간판개선사업**
- 대상규모 : **80개 점포**
- 사업기간 : 2015. 2월 ~ 9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구비 100,000천원)
  - ○ 산출내역 : 2,500천원(업소당) × 80개
  - ○ 지원금액 :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추진방법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정비 유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Ⅳ 세부추진방법

■ 명동지역 건물·점포주들을 중심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정비 유도

○ 명동 지역의 건물주, 점포주 등 관계자와 디자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주민위원회 구성

○ 중구청(지원)과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주관) 간 사업추진 협약 체결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시공업체 선정방법 결정(협약 또는 공모)

■ 명동 대표 명소지역으로 만화의거리 특성에 맞는 컨셉과 테마를 주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와 협업하여 명동 주변 환경이미자와 만화캐릭터를 최대한 살린 컨셉과 테마를 주제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생동감있고 재미있는 간판디자인 거리조성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인증 제품을 고려한 시공

○ 고효율의 인증문자 간판용 LED모듈(국산제품) 사용 및 KS인증업체 또는 이와 동일한 조건의 LED 시공·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 ON/OFF 타임스위치 부착 의무 조건 부여

■ 지속적인 관리 및 신속한 A/S 체계 구축

○ 2년간의 지속적인 관리(A/S)를 위한 이행하자보증보험 징구

○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 체제 유지

Ⅴ 추진 주관(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 추진목적 : 주민위원회 구성 ·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정비 유도
- 명　　칭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구성일시 : 2015. 2. 24(화) 15:00
- 구성인원 : 10명
- 구 성 원 : 건물 · 점포주, 전문가, 단체장
- 임원구성 : 위원장(호선), 부위원장 · 간사(위원장 지명)
- 위원회 기능
  - ○ 간판개선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
  - ○ 간판개선 정비업체 선정 방법 및 선정(공모 또는 협약)
  - ○ 간판개선 디자인 지침범위 내 협정내용 자율결정
  - ○ 간판개선 대상지역에 대한 간판자율정비 추진
  - ○ 점포주 동의율 향상을 위한 건물주, 점포주 적극 참여 독려
  - ○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산
  - ○ 기타 추진사항은 중구청(도시디자인과)과 협의 추진

Ⅵ 추진 체계도 및 역할

- 추진 체계도

중 구 청

- 예산지원(점포당 2,500천원 이내)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관리

⇕< 협약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간판개선사업 주민자율추진

⇔ 참여 독려

점포주 및 건물주

참여 및 간판관리

⇕< 계약 >

사업체 선정(주민위)

- 업체선정 지원 및 업체 추진실적관리(구청)

↗ 〈동의 · 디자인협〉 〈간판설치〉

기관별 역할

○ 중구청 : 지원협력 및 예산지원

⇒ 디자인 자문 및 예산지원 : 점포별 2,500천원 이내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협력 지원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등 표시방법 기준마련(고시)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수립 시행, 참여간판 허가 및 관리 등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추진 및 관리주체

⇒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자율적 유지관리 실시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 독려
- 간판개선 사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디자인 적용, 간판 설치 등 중구청과 사업협의 추진

Ⅶ 개선효과 및 사후관리

개선효과

○ 우리구 대표명소인 만화의거리 간판을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간판디자인으로 만화의거리에 걸맞는 거리 환경 제공

○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전력소비량이 감소와 CO2 배출량 감소로 저탄소 녹색성장 효과 창출에 기여

사후관리

○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뛰어난 재질의 국산 LED 조명을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

○ 간판조명 개선 후 A/S 및 하자발생 시 2년이상 관리토록 하자보수 이행보험증서 징구

○ 간판개선 구간의 주민위원회 및 점포주들이 주축이 되어 관리·단속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운영

Ⅷ 추 진 일 정

- 2015. 2월 :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5. 2월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구성, 업체선정
- 2015. 3월 : 공람공고・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3~8월 : 업소동의서 징구, 간판디자인 협의 및 간판설치
- 2015. 9월 : 준공식 개최

붙임: 1. 간판개선사업 추진 공람공고문(안) 1부.
2.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 1부.
3.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000호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공람공고(안)

1.「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2015. 2. 0 ~ 3. 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디자인과(☎02-3396-5984)

다. 주요내용

(1) 사업명칭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명동 만화의거리 구간 점포 80개점포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4)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9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6)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구비 100,000천원)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명동 만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위 치 도

현장사진

【붙임 2】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서

< 중구청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와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한다)는 2015년도 만화의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2. 대상규모 : 만화의거리 구간 **80**개 점포
   (추후 예산규모 및 현장사정에 따라 개선물량 변동 가능)
3. 사업기간 : **2015**년 **2**월부터 ~ **2015**년 **9**월까지
4. 지원금액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구비 100,000천원)
   - 산출내역 : 2,500천원 × 80개
   ※ 1업소당 지원 : 1업소 당 2,500천원(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구”**로부터 당해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는 **“위원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위원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위원회"**는 **"중구"**에서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2부를 즉시 **"중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중구"**는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액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갑으로부터 교부 받는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단체장 이름 명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의 간판 개선 비용과 건물외관마감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추진업체 선정 후 2주이내에 사업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조금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 사실을 **"중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위원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구"**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위원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2월 일

"중구"
단체명 : 서울특별시 중구
주 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대표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위원회"
단체명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주 소 :
대표자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장** (인)

【붙임 3】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주민들 협의로 추진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의 위치) 만화의거리 구간 80개점포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1. 간판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결정
2. 간판개선사업의 간판 디자인 결정
3. 간판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
4. 간판개선사업 지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대상지역의 건물주, 점포주,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하고, 기타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경리업무보조 및 사무를 관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의 요청 또는 중구청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소집 등이 단기간에 어려울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위원회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